

(재)인천중구문화재단 공고 제2025-76호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2025년 하반기 야외공연장 수시대관」 공고

인천중구문화재단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야외공연장 수시대관 신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관을 원하시는 전국의 예술단체 및 개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7. 7.

(재)인천중구문화재단 대표이사

1. 공고개요

- 가. 대관기간 : 2025. 9. ~ 12. ※ 대관 가능 일자 [붙임1] 참조
- 나. 대관시설

연번	구분	시 설 명	비고
1	야외공연장	갈매기홀	
2		연안부두 해양광장	

- 다. 공고기간 : 2025. 7. 7.(월) ~ 21.(월) [15일간]
- 라. 접수기간 : 2025. 7. 7.(월) 10:00 ~ 21.(월) 18:00 [15일간]
- 마. 결과발표 : 2025. 8. 8.(금) (예정)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 불가

- 가. 접수처

대관시설	접수 이메일	연락처
야외공연장	safetydoor@ijcf.or.kr	070-8829-5594

나. 접수 메일명 : “(수시)대관시설(날짜)-단체명” ※ 예시\_ (수시)갈매기홀(9월1일)-○○단체

다. 접수 유의사항

- 1) 공연·행사 준비 및 철수 일정까지 대관기간에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 2)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 불가합니다.
- 3) 월요일(야외공연장 휴관) 및 공휴일은 신청서 접수 여부 확인 불가합니다.
- 4) 대관 확정 여부는 심의 후 일괄 발표합니다.

라. 제출서류 ※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내용과 다른 공연을 진행할 경우 대관 제한

- 1)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붙임2, 필수)
- 2) 야외공연장 사용 계획서(붙임2, 필수)
- 3) 참여자 명단(붙임2, 필수)
- 4)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붙임2, 필수)
- 5) 시설 사용자 서약서(붙임2, 필수)
- 6) 대표자 개인 신분증(필수)
- 7) 사업자등록증(해당자) 또는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참여자 5인 이상의 단체인 경우, 한가지 필수
- 8) 사용료 감면 단체 증명서류(해당자), 집회신고필증(해당자)

### 3. 사용시간 및 사용료

가. 야외공연장

구 분		사 용 료	비 고
평일	오 후 [10:00~16:00]	80,000	• 동일단체의 경우 월 2회까지 대관 가능 • 부대시설(전기,조명,영상) 포함
	야 간 [17:00~21:00]	80,000	
주말	오 후 [10:00~16:00]	100,000	
	야 간 [17:00~21:00]	100,000	

※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과

#### 4. 시설현황

구 분	월미도 야외공연장 갈매기홀			연안부두 해양광장 야외공연장		
무대면적	235.6m <sup>2</sup>			253m <sup>2</sup>		
조성일시	2013. 5. 13.			2011. 6. 1.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문화로 36(북성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36(항동7가)		
부대시설	전기	조명	영상	전기	조명	영상
	○	○		○	○	
공연장 사진						

※(월미도 학공연장)시설 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반기 대관불가

#### 5. 사용료 감면 대상

##### 가. 100% 감면 대상

- 1) 재단이 주최·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
- 3) 제출서류 - 주최·주관 기관의 대관사용 요청 공문 (직접 재단으로 전자 제출)

※ 후원 행사의 경우 사용료 감면 불가

##### 나. 50% 감면 대상

- 1) 단체 또는 개인이 주최·주관하는 비영리목적의 공연·전시·행사
- 2) 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주최·주관하는 비영리목적의 공연·행사·전시
- 3) 제출서류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6. 대관 심의

가. 목 적 : 대관 적합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 및 승인하기 위함

나. 심의방법 :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기준, 일정 경합 시 허가 결정 기준 등에 따라 대관 적합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 및 승인

다. 심의기준

기준항목	세부평가항목
내용구성 (40점)	· 관람객에게 재미, 감동, 영감 등을 줄 것이라 예상되는가? · 특정계층이 아닌 일반 관람객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 문화예술향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공공성 (30점)	·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문화격차해소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소외계층 없이 균등한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신뢰성 (30점)	· 최근 2년간 제재없이 정상 운영하였는가? · 제출서식을 성실하게 작성하였는가?

라. 일정 경합 시 허가 결정 기준

구 분	허가 결정기준
야외공연장	1.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 중 시·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제출서류 - 후원기관의 협조공문(직접 재단으로 전자 제출) 2. 중구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제출서류 - 비영리단체증

마. 공통우선순위

- 1) 재단이 주최·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 3) 대관 기간의 장기간 순

## 7. 대관허가의 제한 및 취소

- 가. 대관시설을 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
- 나. 대관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허가 후 별도의 사유 없이 대관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자

###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시설 대관규정>

제6조(대관 신청 자격정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간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대관사용의 승인을 얻어 계약 체결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취소를 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에 따라 대관이 취소 또는 사용이 제한된 경우
3. 본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대관시설의 사용권을 양도·전대한 경우
5. 사용자가 재단의 승인 없이 공연·전시·행사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진행한 경우
6. 사용자 응대 과정에서 재단 근로자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

※ 2024년부터 대관단체 이력관리 시행

※ 야외공연장은 날씨로 인한 취소 시 일기예보 증빙 필수

- 다.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 라.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공연
- 마. 사회통념에 반하는 종교적 행사
- 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가 있는 공연
- 사.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
- 아. 사용자가 대관규정 또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자. 사용허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차.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때
- 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타. 대관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 8. 유의사항

- 가. 공정한 대관을 위해 방문접수 및 사전 상담 등이 제한됩니다.
- 나. 접수방법은 비대면 접수로 일원화됩니다.
- 다. 정기·수시 대관 모두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 라. 대관 공고 및 접수 시기는 상·하반기, 연 2회입니다.
- 마. 대관 사용 변경 또는 취소 시 별도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공연(행사) 시 상업성 홍보 및 판매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사. 공연(행사) 주최자는 출연 대가로 출연자에게 금품 등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아. 참여자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 시민의 출연을 금지합니다.
- 자. 공연장 무대 외 광장 등 시설 사용의 경우 담당기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차. 동일 공연으로 중복 신청하는 경우 또는 월 2회를 초과하여 같은 공연장을 사용하는 경우 대관이 제한됩니다.
-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9. 참고사항

- 가. 2025. 8. 8.(금) : 2025년 상반기 수시대관 선정결과 발표 (예정)
- 나. 2025. 9. 22.(화) ~ 11. 28.(금) : 2025년 하반기 상시대관 접수 (예정)
- 다. 문 의 :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시설안전팀 ☎ 070-8829-5594

- 붙임 1. 대관 가능 일자 1부,  
2. 시설사용 신청 양식 1부. 끝.